

교원인사규정

1999년 03월 01일 제정 2014년 08월 25일 개정 2018년 08월 27일 개정 2020년 02월 06일 개정 2022년 06월 0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복음신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건신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임용, 승진 및 기타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2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에게 적용된다.

② 특별교수, 초빙교수, 대우교수, 겸임교수, 강사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8.27., 2020.02.06.>

제2조의 1(정의) 이 규정에서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08.27.]

제3조(겸직금지)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본 기관 이외의 타 기관에 전임직을 겸할 수 없다.

② 타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은 경우나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겸직의 범위) <삭 제>

제5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 법에 준하여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6조(자격) ① 교원의 신규임용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로 교육자로

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08.27.>

- ② 본교가 정한 정관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결정에 따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7.>

제7조(임용기간) ①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1. 교수 :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2. 부교수 : 2년
- 3. 조교수 : 1년
- 4. <삭 제>

② <삭 제>

③ 교수 이하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자연 임용해제 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삭 제> <개정 2018.08.27.>

제8조(임용절차) ① 교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또는 본 대학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 심사는 서류심사, 전공심사, 강의심사, 면접심사 순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절차를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신규임용지원자의 단계별 심사를 위해 외부심사위원을 초빙할 수 있다.

④ 심사를 마친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임용 제청한다.

[전문개정 2018.08.27.]

제9조(연구실적 심사기준) ①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별표 3.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에 의한다.

② 신규임용은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1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4년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8.27.]

제10조(심사방법) 교원의 신규임용심사는 각 단계별로 해당전공분야의 교원을 포함하여 상위직 또는 동일직 교원 3인 이상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시 교원인사위원회에 일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8.27.]

제3장 승진임용 [신설 2018.08.27.]

제11조(소요연수) ① 교원의 승진임용의 최소 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교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2. 부교수에서 교수 : 6년

② 경력교원은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하더라도 동일직급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과연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08.27.]

제11조의 1(승진시기) 승진재임용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날이 속하는 학기말 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8.08.27.]

제11조의 2(연구실적) ① 교원의 승진임용에 대하여 제11조의 소요연수에 도달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 : 최근 6년 이내에 600% 이상
2. 부교수에서 교수 : 최근 6년 이내에 600% 이상

② 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별표 3]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8.08.27.]

제12조(임용절차) 승진임용의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3개월 전 승진임용 대상자에게 승진임용 대상자임을 통보한다.
2. 2개월 이내에 연구실적 및 교원임용 심사평정을 완료한다.
3. 교원인사위원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임용제청한다.

[전문개정 2018.08.27.]

제13조(심사내용) 승진임용의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27.>

1. 연구실적
2. 교원승진임용심사평정[별표 2]
3. <삭 제> <개정 2018.08.27.>

제14조(심사방법) ① 연구실적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08.27.>

1. 연구실적은 해당전공분야 연구실적물로서 제11조의 2에 규정한 연구실적 이상이
어야 한다. <개정 2018.08.27.>
2. 연구실적 기간은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3.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별표 3]에 의한다.
4. 연구실적 심사평정은 동일직급 또는 상위직급 교원 3인 이상이 심사한다.

<개정 2018.08.27.>

5. 석·박사 학위 논문의 평가는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승진임용심사평정표

1. 교원승진임용심사평정은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18.08.27.>
2. <삭 제>
3. <삭 제> <개정 2018.08.27.>
4. 교원승진임용심사평정의 판정은 평정영역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70점 이상을 합
격으로 한다.

③ 박사학위 취득논문은 연구실적 소요연수 이내의 것만 인정한다.

④ <삭 제> <개정 2018.08.27.>

⑤ <삭 제> <개정 2018.08.27.>

제15조(승진의 제한) ① 교원이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
진 임용될 수 없다.

② 제11조에 규정한 승진최소 소요기간에는 제2조 제2항으로 임용된 경우는 포함하
지 않는다.

제4장 재임용 [신설 2018.08.27.]

제16조(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중에서 전 임용기간중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참작하여 매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학기도중 임
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
로 본다.

1. 연구실적(기준미달여부)

2. 본교 신학적 입장과 적합성 여부
 3.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참여도
 4. 학생에 대한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5. 교수강의 평가내용
 6. 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본분 수행과 품위유지
- ② 임용기간 중에 갖추어야 할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27.>
1. 조교수에서 조교수 : 최근 2년 이내 200% 이상
 2. 부교수에서 부교수 : 최근 4년 이내 400% 이상
 3. 연구실적 기간은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재임용기간) 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 : 4년
 2. 조교수 : 2년
 3. 교수 이하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자연 임용해제 되는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8.08.27.]

제18조(재임용절차) 재임용 절차는 제12조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8.08.27.>

제19조(심사내용) 재임용 심사내용은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8.08.27.>

제20조(심사방법) 재임용 심사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단, 연구실적 산정기준은 제16조 제2항에 의한다. <개정 2018.08.27.>

제21조(소명기회 부여) 평정결과 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탈락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재검토 할 수 있다.

제5장 교원인사위원회 <개정 2018.08.27.>

제22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학교법인 복음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를 임면·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인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기준미달여부)
 2. 본교 신학적 입장과 적합성 여부
 3. 전문영역의 학회 참여도
 4.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천
 5. 교수강의 평가 내용
 6. 교육관계법 준수 및 교원으로서 본분 수행과 품위 유지

- 제2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2.06.>

- 제25조(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장은 회의록을 간사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 ③ 인사위원회는 간사를 참여시킨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27조(인사위원회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를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인사관련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제2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6장 휴직 및 복직 <개정 2018.08.27.>

제29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내지 제 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함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 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하게 때
9. 상기 각호의 사항 외에 사회통념상 휴직의 사유가 인정된 때

제30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범위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서 한다.
2. 제2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29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2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2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1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제32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29조의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29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29조 제9호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총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제7장 해임 및 징계 <개정 2018.08.27.>

- 제33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행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③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 임면권자는 제 2항 제 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에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 2항 제 1호와 제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 2항 제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34조(교원징계위원회 설치) ①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의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의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에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8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37조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인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수가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 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사건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44조(교원징계 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명을 줄 수 있다.

제45조(운영세칙) 교원징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복 무 <개정 2018.08.27.>

제46조(복무) 교원의 복무는 교직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46조의 2(교원 갑질 금지) 교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에 따라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2. 폭행, 사적업무 또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학생 간 불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02.06.]

제9장 보 수 <개정 2018.08.27.>

제47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포 상 <개정 2018.08.27.>

제48조(포상) 교원의 포상은 교직원 포상 규정에 지급한다.

제11장 인사기록 <개정 2018.08.27.>

제49조(임용서류) 교원을 임용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0조(경력조회) 전직경력을 가진 자를 신규임용 할 때에는 전직경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임용이 확정 발령되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보 칙

제51조(명예총장) 총장직으로 성실히 봉직하여 학교 발전 및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총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총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세부시행 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2조(보직임명) ① 교원의 보직은 학내 질서의 유린한 사례가 없고 학교운영 질서를 확립할 자세에 있는 자에 한하여 보직을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직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직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직변경을 하지 않는다.
③ <삭제>

제53조(신분보장예외) 본 기관과 관련 설치 경영하는 학과 및 부서의 기구 개편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과, 폐직 등으로 감원이 될 때 및 학과의 개편에 의하여 폐직이나 감원이 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시킬 수 있다.

제54조(교원 군 경력 평정) 군 복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수를 가산한다.

1. 15개월 이하인 경우: 1호봉 가산
2. 27개월 이하인 경우: 2호봉 가산
3. 36개월 이하인 경우: 3호봉 가산
4. 36개월 이상인 경우: 3호봉 가산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규 채용 교원 제출서류

- ① 이력서(사진부착, 학력 및 경력 상세하게 기록) 1부
- ② 학위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③ 경력증명서 각 1부 (교육경력, 목회경력, 전공관련실무경력 모두 포함)
- ④ 기본증명서
- ⑤ 신원진술서
- ⑥ 연구실적목록(최근 4년 이내) 1부
- ⑦ 연구실적물(최근 4년 이내) 1부
- ⑧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각 1부
- ⑨ 본교 지원 사유서(학교발전/ 전공발전을 위한 소견 포함) 1부

[별표 2] <개정 2020.02.06.> <개정 2022.06.09.>

교원(승진임용, 재임용)심사평정표

소 속	건신대학원대학교	확 인 자	(인)				
직 급							
직 위							
성 명							
평 점 항 목		평 점 점 수					
		수	우	미	양	가	
1. 기본사항(30)	본교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와의 적합성 여부 (30)	30	25	20	5	0	
2. 연구, 공연 및 창작부분 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참여도 (20)	1. 연구실적(15) 수 : 300% 이상 우 : 200% 이상 - 300% 미만 미 : 100% 이상 - 200% 미만 양 : 50% 이상 - 100% 미만 가 : 50%미만	15	12	10	5	0	
	2. 전문영역의 학회참여도(5)	5	4	3	2	1	
3.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20)	1. 수행이행 상태(수업준비, 수업성실도) (10)	10	8	6	4	2	
	2. 담당과목 및 담당수업시간(5)	5	4	3	2	1	
	3. 학생상담 및 지도(5)	5	4	3	2	1	
4. 교수강의 평가내용(10)	1. 강의평가(5)	5	4	3	2	1	
	2. 성적평가 및 과제물부여(5)	5	4	3	2	1	
5. 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본분수행과 품의유지 (20)	1. 기독교대학 교수로서의 신앙생활 및 인격과 품위(10)	10	8	6	4	2	
	2. 교원으로서의 직무 충실도(10) (각종회의, 행정사항 등에 대한 이행, 협조도)	10	8	6	4	2	
총 합 평 점							
총 점							
직 명		성명	(인)				
※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							

[별표 3] <개정 2022.06.09.>

연구실적물에 대한 범위 및 인정환산율표

연번	범	위	인정환산율 (%)
1	학 술 저 서	① 국외에서 출판된 것에 한함	200
		② 국내에서 출판된 것에 한함	100
2	논 문	① 세계적인 최고의 저술지 발표논문(등재)	200
		② 국외 연구 저술지 발표 논문	100
		③ 대학이 추천하는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2학기간)	100
		④ 대학이 추천하는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1학기간)	50
		⑤ 국내 연구 저술지 발표 논문(등재 및 등재후보)	100
		국내 연구 저술지 발표 논문(기타)	50
		⑥ 교내 연구 저술지 발표 논문	50
		⑦ 공동저자(2인 이상) 발표 국외 논문(등재 및 등재후보)	100
공동저자(2인 이상) 발표 국외 논문(기타)	50		
3	학 위 논 문	① 박사학위 취득논문(심사하지 않음)	200
4	공동연구실적물 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편찬된 1종 교과서	①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
		②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70
		③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50
		④ 4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30
5	학회 및 학술회의 참석	① 국외 학술 모임	30
		② 국내 학술 모임	20
		③ 국외 학회 참석 및 논평	50
		④ 국내 학회 참석 및 논평	30
		⑤ 국외 학회 논문 심사(등재 및 등재후보)	20
		⑥ 국내 학회 논문 심사(등재 및 등재후보)	10
6	전공분야의 논문 및 서적 번역	① 약 100페이지 이상	50

[별표 3-1] <개정 2022.06.09.>

공연, 창작 부분 연구 실적

대항목	소항목	평가점수	비 고
매체제작 1)	DVD, CD, VCD(개인 독집)	100	출판물 등록된 것에 한함
	DVD, CD, VCD(참여)	30	출판물 등록된 것에 한함
공연 2)	개인	100	200석 이상의 국공립 단체 소속의 공연장
		30	200석 이하의 공연장
	협연	50	200석 이상의 국공립 단체 소속의 공연장
		10	200석 이하의 공연장
전시 3)	공인 국제전 수상	200	공인된 국제전에서의 입선 이상의 출품작(우리나라를 제외하고 3개국 이상 참여해야 함)
	전국 공모전 수상	100	국가, 광역시도 등이 개최한 대회에서의 입선 이상 출품작
	개인전 개최(국외)	100	신작 10점 이상을 출품하여야 함
	개인전 개최(국내)	50	
	단체전 개최(국외)	50	2인 이상이 출품한 신작으로 구성된 공동 작품전
단체전 개최(국내)	30		

- 1) 매체 제작 : 매체제작의 경우 실황연주 및 개인이 자체 제작한 매체는 인정하지 않으며 저작권, 저작 인접권 또는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 권리가 등록된 경우만 인정한다.
- 2) 공연 : 음악, 연예, 국악 등 예술적 창작물을 실연에 의해 대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품 판매 및 선전에 부수된 공연은 제외한다. 반복된 순회공연은 1회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공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연 사진, 팸플릿 등을 제출해야 한다.
- 3) 전시 : 각종 창작물 전시를 말하며 전시 작품 사진, 창작물 관련 팸플릿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4) 공연, 창작 부분 연구 실적 인정 범위 :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연구 학술 활동 권장을 위해 총 연구실적 점수의 50% 범위에서만 공연, 창작 부분의 연구실적을 인정한다.

[별표 4] <개정 2022.06.09.>

교원 경력인정 환산율표

경 력	환 산 율
1.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전임교원이 재직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1회에 한함) 2. 군 복무기간 및 국가기관 근무경력 3. 타 대학(학력인정 대학 이상)에서의 전임교수 경력 4. 본교 전신인 건신교의 전임교수 경력	100%
1. 학력인정 대학 이상의 강의 경력(주당 5시간 이상) ※ 단, 주당 5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며, 50%를 초과하지 못함 <개정 2022.06.09.> 2. 담임목사의 목회 경력 3. 정식 파송된 선교사 경력 4. 중·고등학교 교원 경력자 중 전공분야와 부합하는 과목을 담당 한 경우 5.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연구기관의 근무 경력 중 인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50%
1. 학력인정 대학 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주당 5시간 이하) 2. 중·고등학교 교원 경력자 중 전공분야와 부합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할 경우	30%